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拒 絶 定

<大法院 第2部 判決>(1982. 3. 23)

裁判長：大法院判事 신정철

關與法官：〃 강우영, 이정우

1. 審判請求人(上告人)：이희준(서울 도봉구 미아 6동 1268—263)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特許廳長

3. 原審決：特許廳 抗告審判所 1980. 6. 26字, 1979年 抗告審判(절) 第515號 審決

4. 主文：上告를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負擔으로 한다.

5. 理由

審判請求人の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이事件 實用新案登録出願 考案인 不姪帶는 그出願書에添附된 明細書와 補正書에添附된 대로製作하여도 이를着帶하여 起立, 據動하면 自然히流入口가 閉鎖될 것이豫想되어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데도 위각명세서는 이에 관한 아무 설명도 보이지 않으니 이事件出願에는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實施할 수 있을 정도로 그考案의 目的, 構成, 作用 및 效果를 說明하는 詳細한 說明書가 없는 경우에 該當하여 舊實用新案法(1980. 12. 31改正된 法律)第12條, 同施行令(1981. 7. 30改正된 施行令)第1條第2項, 第4項에 어긋나는 出願일 뿐만아니라 오줌을 받기 위하여 着用하는 귀저귀를 3겹으로 제작한다는 고안은 생리대나 귀저귀를 만드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者が 극히容易하게 着用할 수 있는 程度의 것으로서 獨自의 創作性이 認定되지도 않는다는 理由로 이事件登錄出願을 拒絕한 事情을 維持하고 있는 바 記錄에 의하여 살펴보면 原審의 위와 같은 判斷은 正當하다고 보여지며 거기에는 所論의 審理未盡 등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論旨는 理由없다.

그러므로 上告를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敗訴者の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一參考一

抗告審判

1979年 抗告審判(절) 第515號

抗告審判請求人：이희준

被抗告審判請求人：특허청장

主文：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